#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0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수진・이건태・이기헌

신정훈 · 송옥주 · 민형배

한정애 · 송재봉 · 민병덕

이연희 • 서미화 • 김준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 항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별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 ⑧ (생 략)	조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⑨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
	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별도
	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
	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
	<u>할 수 있다.</u>